

의안번호	2218411
의 퇴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6.8.14.
추계번호	26D2220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5항 (중앙기록물관리기관)	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과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원, 보존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4조의2 (준기록관)	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(이하 “준기록관”이라 함)에서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5조제9항 (국가기록관리위원회)	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43조(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)	-행정안전부장관은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※현행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도록 함 -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위하여 민간기록물의 목록, 내용 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음 ※현행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 실시 가능 -(신설)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45조(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·관리)	-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※현행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시설 설치 요청 및 비용 지원 가능 -행정안전부장관은 소유자 등이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음 ※현행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	재량규정
6	안 제45조의2 (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5항(중앙기록물관리기관)	(미대상) • 현행법 시행령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¹⁾,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 강화, 기록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를 경우 “지원”이 가능하나, 개정안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의 “직접 수행”이 가능함. 개정안에 따라 기록물관리업무의 수행 주체는 변경될 수 있으나(직접 수행 또는 지원), 업무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14조의2(준기록관)	(미대상) • 현행법 시행령은 기록관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²⁾, 기록관의 설치·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, 개정안에 따른 “준기록관”의 사무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15조제9항(국가기록관리위원회)	(미대상) • 현행법 제15조제9항³⁾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의,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이미 규정⁴⁾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43조(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)	(미대상) • 개정안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·해제 및 관리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, 업무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5	안 제45조(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·관리)	(보존·관리 주체 변경: 미대상) • 개정안은 국가지정기록물 보존·관리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, 업무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(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: 미대상) • 현행법 시행령은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⁵⁾, 해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6	안 제45조의2(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현행법 시행령 제6조(중앙기록물관리기관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.

2. 상세 사유

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관련(안 제45조의2)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을 지정·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, ①심의위원회 구성, ②지정기록물 관리 등에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할 때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관리업무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 - 제80조(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)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

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

2.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

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다.

2) 현행법 시행령 제10조(기록관의 설치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·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~⑦ (생략)

3) 현행법 제15조(국가기록관리위원회) ①~⑧ (생략)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현행법 시행령 제13조(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전문위원회위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③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, 전문위원회를 주관한다.

④ 위원은 소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특별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·운영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및 기간연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특별위원회위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,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④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, 특별위원회를 주관한다.

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5) 현행법 시행령 제84조(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)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, 소
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- 제83조(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)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에
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관리상황의 변동여부를 점검하고, 2년에 1회 이상 그
보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다만,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을 대통령
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인원 및 구성, 위원회 개최 횟수 등을 추정
하기 어렵고, 해당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지방자치단체의 수 또한 예측하기 어
려워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- 또한,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정기록물의 규모에
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개정안에 따라 지정될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
내용·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재정
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